대구광역시수성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-24호

2026년 수성구 일반임기제공무원(한의사) 임용시험 공고

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2일

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근무예정 부서	임용계급	임용 인원	임용 기간	담 당 업 무
한의약 진료 및 상담 (한의사)	보건소 건강증진과	지방의무사무관 (일반임기제)	1명	2년 (27.1.1. ~28.12.31.)	○ 한의약 진료: 진료, 시술, 투약 등 ○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○ 기타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등

※ 업무상 필요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, 이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)

2 법령근거

❍ 「지방공무원법」

❍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❍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
❍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

❍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❍ 「의료법」 제5조, 제8조, 제66조

3 응시자격 요건

■ 공통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- ❍ 연령: 18세 이상
- ❍ 성별: 제한 없음 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❍ 거주지(지역): 제한 없음
- ❍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제43조의2(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§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§「지방공무원법」제43조의2 (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
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·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(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)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§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가.「변호사법」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나.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다.「세무사법」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라.「외국법자문사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마. 삭제 <2022. 1. 4.>
 바. 삭제 <2022. 1. 4.>
 사.「유아교육법」,「초·중등교육법」,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아.「의료법」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자.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

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⑤「공직자윤리법」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

■ 임용분야 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❍ 「의료법」 제5조에 의한 **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**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임용분야	자격기준
한의약 진료 및 상담	1. 학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 : 공공기관, 법인, 기업체, 단체, 병원 등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

1)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**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**이 지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

2)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: **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**되어야 함

3) 전임근무(8시간/1일)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**주당 근무시간이 명시**되어야 하며(예시:주20시간근무)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❍ 「의료법」 제8조(결격사유 등)의 결격사유가 없고, 같은 법 제66조(자격정지 등)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§**「의료법」제8조(결격사유 등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. 다만, 간호사에 대하여는「간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3.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§「의료법」제66조(자격정지 등)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.

1.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
2.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

2의2.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

3.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·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·수정한 때
4. 제20조를 위반한 경우
5. 삭제 <2020. 12. 29.>
6.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
7. 관련 서류를 위조·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
8. 삭제 <2011. 8. 4.>
9.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
10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
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(제1항제5호·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)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사유에 대하여「형사소송법」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

4 보수수준

❍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채용구분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(하한액의 120% 범위 내) 책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5급(상당)	-	69,663천원

※ 연봉 외 급여(각종 수당)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
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■ 채용절차

채용계획 수립 ⇒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⇒ 채용 공고 ⇒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시험 ⇒ 최종합격자 통보 ⇒ 적격심사 신원조회 <임용>

※ 채용 공고 시 응시자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인 경우 및 적격자 없을 경우 재공고

■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기간	서류심사 합격자발표	인성검사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6. 11. 10.(화) ~ 11. 12.(목), 3일간	2026. 11. 18.(수)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 게시		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별도 통보

■ 시험방법

❍ 1차 서류심사

- 응시자의 자격 .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
 ※ 서류전형 기준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

※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

- 합격자 발표: **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**

❍ **인성검사**

-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

※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※ 결과분석 자료는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

❍ **2차 면접시험**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.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.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(분야별 20점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

※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때

※ 면접 당일 면접 종료 시까지 불참자는 응시포기로 간주

- 적격자가 없을 경우(모두 불합격인 경우)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❍ **최종합격자 발표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**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 응시원서 접수

❍ 교부처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을 출력하여 사용

❍ 접수기간: 2026. 11. 10. ~ 11. 12.(3일간) (09:00~18:00/점심시간 제외)

❍ 접수장소: 수성구청 행정지원과(본관 3층)

❍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접수(등기)

-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- 주소: 우(42086)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, 수성구청 행정지원과(인사팀)

※ 우편접수 시 반드시 도착여부 유선 확인 바람(☎053-666-2234)

※ 우편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7 제출서류

❍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(별지서식 제1호)

❍ 응시원서 1부(별지서식 제2호)

- 응시수수료 : **수성구 수입증지(10,000원)를 본관 1층 민원여권과 7번 창구에서 구입**

※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및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아님

-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

❍ 이력서 1부(별지서식 제3호)

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❍ 자기소개서 1부(A4용지 2~3매)(별지서식 제4호)

❍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서식 제5호)

❍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6호)

❍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7호)

❍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
-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,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(또는 학위증서) 모두 제출
-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(별지서식 제8호) 제출

❍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1부

- 재직기간, 직위, 담당업무(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)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하며,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
-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**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서식 제9호) 추가** 제출
-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
- 이력서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개별적 사유로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(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)
-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공무원 경력 증빙은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(징계현황 포함) 제출
- 원서 접수일 이후에는 기제출 경력사항이 아닌 새로운 경력사항에 관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
- **경력증빙자료(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)**

 -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
 ⇒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
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 -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, 필요시 **사업자등록증**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❍ 관련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

❍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10호)

8 기타(유의)사항

❍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❍ **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**

❍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
※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
❍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❍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❍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. 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.

❍ **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**

※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

❍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,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❍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, 증빙하지

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❍ 응시서류상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❍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합니다.

❍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성구 건강증진과,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: ☏053-666-3124
- 행정지원과 인사팀: ☏053-666-2234

붙임 1 직무기술서

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선발예정인원
한의약 진료 및 상담	지방의무사무관 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수성구	수성구보건소 건강증진과

주요업무	❍ 한의약 진료: 진료 및 시술, 투약 등 처치 ❍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❍ 기타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등
필요역량	○ **(공통 역량)**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, 조직이해능력(조직체제이해능력) ○ **(직급별 역량)**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 ○ **(직렬별 역량)**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문제해결능력, 창의력
필요지식	○ 한의진료에 대한 전문 지식 ○ 지역사회 특성 및 건강수준 분석 ○ 지역 특화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발굴 · 기획 · 수행 및 평가 ○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분석 및 활용 ○ 행정실무 처리를 위한 컴퓨터 정보처리 능력

응시자격요건	**관련분야 : 한의약 진료 및 상담**	
	자격기준	○ **「의료법」 제5조에 의한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** 1.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】 : 공공기관, 법인, 기업체, 단체, 병원 등에서 상근 근무한 경력
우대요건		